

학생군사교육단 운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학군단 설치)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장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57조제2항 및 「학생군사교육실시령」(대통령령 제20740호)에 따라 대학교내에 학생군사교육단(이하 “학군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 2 조(제정목적)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 학군단 운영 및 학군 사관후보생 군사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학군단 임무) 학군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학군사관후보생 교육훈련 및 훈육지도
2. 학군사관후보생 선발업무
3. 군장학생 선발 및 관리업무
4. 학교에 소속된 군 위탁생 관리업무
5. 기타 학군사관후보생 관련업무

제 2 장 학생군사교육요원 편성

제 4 조(직제편성) 학군단에 대한 직제편성은 대학 총장 직속기구로 하고 인원은 국방부에서 파견한 학생군사교육요원으로 편성하여 운용한다.

제 5 조(학생군사교육요원) 국방부에서 대학교에 파견한 학생군사교육요원은 파견근무기간 동안 학군 사관후보생 교육훈련 업무와 관련한 대학 총장의 지휘와 동시에 군 지휘계통의 지휘를 받는다. 단, 학생군사교육요원의 인사관리(보직, 진급, 면직 등) 권한은 군인사법에 따른다.

제 3 장 학군사관후보생의 교육과정

제 6 조(군사교육 담당) 학생군사교육은 대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며 국방부에서 파견한 학생군사교육요원이 담당한다.

제 7 조(교내교육) ①교내 교육은 대학교내에서 대학 총장 책임 하에 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및 인격 도야에 필요한 이론과 실기에 대하여 학생군사교육요원이 담당한다.

②교내 교육은 학년별 주 4시간 이상을 2일간 분산하여 교육하며 전 후보생이 군사학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수업시간을 배정한다.

③군사학(R.O.T.C)학점은 일반선택과목으로 8학점을 이수토록 하고, 학군 사관후보생은 군사학 학점 이수로 인한 대학 학점 상한선 규제를 받지 아니한다.

④학군 사관후보생이 우리 대학교 조기졸업 또는 군사학 교육과정 휴학으로 말미암아 대학교 졸업 후에 미이수 군사학 교육을 이수할 경우 재학중인 후보생과 동일하게 군사학 교육을 받는다.

제 8 조(입영교육) ①입영교육은 학군 사관후보생을 군부대에 위탁하여 교내교육에서 습득한 이론과 실기에 대하여 군사적 적응성을 터득하도록 한다.

②대학교는 학군 사관후보생의 입영교육에 필요한 예산 및 차량 등을 지원한다.

제 4 장 대학교의 지원

제9조(홍보업무지원) 대학교는 우수한 학군 사관후보생 및 군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홍보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제10조(우수인력 획득지원) 대학교는 우수한 학생이 학군사관후보생 및 군장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11조(교육시설 및 장비지원) 대학교는 학군 사관후보생 군사교육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전용시설 및 장비를 제공한다.

1. 병기고 및 교재창고
2. 군사교육요원의 사무실 및 병 생활관
3. 학군 사관후보생 군사학 교육에 필요한 교실 및 이에 필요한 교육 장비와 보조재료
4. 학군 사관후보생 내무지도실 및 자치위원회실
5. 학군 사관후보생 체력단련에 필요한 체력단련실 및 샤워실
6. 학군 사관후보생 교육에 필요한 운동장(일반학생과 공용으로 순환사용 가능)
7. 기타 학군 사관후보생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총포, 장비 등 대여) 대학교는 군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총포, 군사장비 등을 군으로부터 대여받아 사용하며, 군수품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

제13조(군사교육에 필요한 예산지원) 대학교는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제14조(학생군사교육요원에 대한 수당 등) 대학교는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3조(학생군사교육요원에 대한 수당 등)에 따라 학생중앙군사학교와 협의하여 학생군사교육요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재 연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5장 학군단 운영위원회

제15조(학군단 운영위원회 구성) 학군단 운영 및 후보생 교육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군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① 위원회는 대학본부 처장급과 학군단장을 위원으로 하고 학군단 선임교관을 간사로 한다.
- ② 위원회 위원장은 대학 총장이 임명한다.

제16조(심의사항) 학군단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군단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관련 사항
2. 국방부에서 추천한 군사학 교관의 임용 및 해임 관련 사항
3. 학군단 운영 및 학군 사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에 대한 학칙 제·개정
4. 기타 학군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6 장 학군사관후보생 재해보상 및 가료

제17조(재해보상금 지급) ①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 제11조의2에 따라 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자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부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무관후보생의 신분에 준하여 국가가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 연금법 시행령 제65조부터 제6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보상)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는 자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으로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유족 및 부상한 자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함께 있어서 이를 각각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족 및 공상 군경으로서 보상을 받도록 조치한다.

제19조(학생군사교육중 부상한 자에 대한 가료) ①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원인이 되어 부상한 자가 병역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가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가료신청서를 대학총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료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체 없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하게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가료신청서를 받은 대학총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입영부대의 장은 국가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가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3의 제2항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가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제20조(보상절차) ①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2에 따라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증명서를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는, 교내 교육을 받던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입영교육을 받던 자는 국방부장관이 발급한다.

제21조(가료비용의 신청 등) 대학총장은 가료가 완료된 경우에 그 비용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한다. 단, 입영훈련 관련 부상자에 관한 사항은 입영부대의 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